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구 소득수준 등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 우선적 지원
의무화〉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879호)

2024.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가구 소득수준 등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 우선적 지원 의무화	2
※ 참고자료	7
□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관련 규정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12. 8.

다. 회 부 일 : 2023.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가구 소득수준 등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 우선적 지원 의무화(안 제3조제2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의 소득수준 등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제10조)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관련 규정 참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가구원수는 115만명으로 2018년 대비 14만명이 증가하고, 다문화가구는 39.9만가구로 2018년 대비 6.4만가구가 증가하여 다문화가구원수와 다문화가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체 인구·가구 및 다문화 가구원수·가구 현황

(단위: 명, 가구)

구분	2018(A)	2019	2020	2021	2022(B)	B-A
전체인구	51,629,512	51,779,203	51,829,136	51,738,071	51,692,272	62,760
전체가구	20,499,543	20,891,348	21,484,785	22,022,753	22,383,187	1,883,644
다문화가구원수	1,008,520	1,062,423	1,093,228	1,119,267	1,151,004	142,484
다문화가구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64,540

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현행법(제6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소득수준 등에 따른 우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의 소득수준 등 기준에 부합하는 다

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¹⁾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²⁾는 상담, 한국어교육, 정보제공, 통역·번역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등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 ⑦ (생략)

지원이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상담, 정보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가정기본법」³⁾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3) 「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관련 규정

-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